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제 · 개 정 연 혁

- 1992년 12월 19일 전문개정
- 1993년 3월 11일 개정
- 2003년 1월 개정
- 2004년 7월 2일 개정
- 2006년 1월 6일 개정
- 2008년 3월 31일 개정
- 2014년 12월 29일 개정
- 2015년 08월 20일 개정
- 2015년 11월 12일 개정
- 2017년 1월 16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가 관장하는 각급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표단은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국가대표 선수의 구분)

- ① 대표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남·여 대표 선수 및 임원을 말한다.
 1. 국가 대표단
 2. U(Under)-23세 대표단
 3. U-20세 대표단
 4. U-17세 대표단
 5.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대표단 (유니버시아드, 동아시아, 각급 연령별 남·여, 풋살대표단 등)
- ② ①항의 각급 대표단에 상비군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과 관리는 대표단의 운영과 관리에 준한 다.

제4조 (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

- ① 각급 대표선수(이하 "선수"라 한다.)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기술위원회가 승인한다. 단, 감독과의 계약에 따라 선수 선발 및 해제를 감독이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각급 대표선수 선발 시, 팀 경기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리그를 계속 관찰하여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잘 구현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도록 한다.

제5조 (대표단의 구성 및 인원)

- ① 각급 대표단은 협회가 필요시 선임한 단장과 감독, 코치, 선수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 ② 각급 대표단의 선수인원은 25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증감을 할 수 있으며, 주요 국제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50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각급 대표단 및 대표단의 구성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 대표단의 지정)

- ① 협회는 특정 축구단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①항의 경우 협회는 지정된 축구단의 장 또는, 그 축구단이 소속된 연맹단체의 장에게 대표단 구성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단체의 장은 대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체 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경기일정의 결정)

협회는 산하연맹과 매년 주요경기 일정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상호 합의를 통해 제반 경기(대회) 일정을 확정한다. 단, 12월 이후에 제기된 대회 또는 경기에 대해서는 FIFA 및 AFC 공식대회가 아닌 경우 추가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선수의 소집 및 통보)

- ① 각급 대표단의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에 규정된 기간에 국가대표단 및 U-23세 이하로 선발된 선수 및 그 소속 구단은 협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협회는 대표단 소집일정을 소집일 7일전까지 선수 및 소속팀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고, 소속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 여부를 협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③항의 서면 통보는 우편물 및 FAX를 포함하고, 전화 및 인터넷 이메일 등을 보조수단으로 한다.
- ⑤ (소집불참) 해당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속팀은 ③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회는 결손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소집일 3일전까지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불참 선수는 소속팀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불참사유(부상시 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기간

및 대표단 해산 후 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속팀의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⑥ (긴급소집) 각급 대표단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인원 결손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할 경우 경기시작 48시간 전까지 이를 소속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선수소집 개시일)

각급 대표단의 주요 대회별 선수소집 개시일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FIFA주최 대회

1. 월드컵 대회

가. 예선 :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
여자팀의 경우 아시안컵 일정에 의한다.

나. 본선 : 개막일 3주전 월요일까지. 단 여자팀의 경우 개막일 30일 전까지

2. U-17, U-20 월드컵대회

가. 예선 : 개막일 14일 전(AFC U-16, U-19 본선대회와 동일). 단, 여자팀의 경우 개막일 25일 전까지

나. 본선 : 개막일 30일 전. 단 남자팀 U-20 팀의 경우 15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

3. 세계 뜻살 선수권대회

가. 예선 : 개막일 20일 전

나. 본선 : 개막일 30일 전

② AFC주최 대회

1. 아시안 컵 대회

가. 예선 :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
여자팀의 경우 경기 15일전까지

나. 본선 : 개막일 14일 전 (여자팀의 경우는 20일 전)

2. 아시아 청소년(U-16, U-19) 선수권대회

가. 예선

a. Home & Away 단일경기

Home : 경기 5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전)

Away : 경기 7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이상 15일 이내)

b. 단일/복수 지역대회(Centralized 방식) : 개막일 10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20일 전)

나. 본선 : 개막일 14일 전(FIFA 세계대회 예선)이며, 여자팀의 경우는 개막일 25일 전까지 소집. 단 남자 U-19팀의 경우 10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

3. 아시아 풋살 선수권 대회 : 개막일 20일 전 (FIFA 세계대회 예선)

③ 올림픽대회

1. 아시아 지역예선<2017. 1. 16. 개정>

가. Home & Away 단일경기<2017. 1. 16. 개정>

Home : 4일(경기일 포함, 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전)

Away : Home경기규정 + 거리에 따라 72시간 범위에서 추가(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이상15일 이내)

2. 아시아 최종예선<2017. 1. 16. 개정>

(타 대륙과의 Play-off 포함)

가. Home & Away 단일경기<2017. 1. 16. 개정>

Home : 경기 5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전)

Away : 경기 8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10일에서 15일 이내)

나. 단일/복수 지역대회(Centralized 방식)<2017. 1. 16. 개정> : 개막일 15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25일 전)

3. 본선 : 개막일 30일 전(※20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 허용)<2017. 1. 16. 개정>

4.<2017. 1. 16. 개정> 올림픽대회 여자 예선이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 본선을 겸할 시는 여자아시안컵대회 소집일정(개막일 25일 전)에 준한다.

④ 친선대회 및 경기

1. 친선대회

가. 남자대표팀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

나. 여자대표팀

국내개최 : 7일 전까지

국외개최 : 7일 전까지

2. 친선경기

가. 남자대표팀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

나. 여자대표팀

국내개최 : 7일 전까지

국외개최 : 7일 전까지

⑤ 기타 대회

1. 동아시아연맹 대회 : 개막일 7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15일 전까지)
 2. 아시안게임 본선 : 개막일 14일 전(여자팀의 경우는 개막일 20일 전)이며, 남자팀의 경우 10일 전까지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
 3. 유니버시아드 대회(프로선수 제외) : 개막일 10일 전 (여자팀의 경우는 15일 전까지)
 4. 동아시안 게임(프로선수 제외) : 개막일 10일 전 (여자팀의 경우는 15일 전까지)
 5. 대륙간컵 등 기타대회의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한다.
- ⑥ 기타 위의 각항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의 소집일은 기술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훈련 보강기간)

- ① 월드컵 본선에 한하여 해당 해의 1월, 2월 중에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훈련 보강 기간을 가질 수 있다.
- ② 올림픽 및 세계청소년(U-20)대회 본선에 한하여 해당 대표팀은 해당 해의 1월, 2월 중에 3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훈련 보강 기간을 가질 수 있다.
- ③ 성인 여자 대표팀은 대회출전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대회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30일, 여자 U-20, U-17 대표팀은 40일 이내의 훈련보강기간을 각 가질 수 있다.

제11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 ① 각급 대표단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기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② 협회는 ①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각급 대표단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전임으로 선임할 경우 전임계약을 체결한다.
- ④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대표단에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단장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으로서의 능력과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⑤ 지도자 선발은 공개선발 또는 우수지도자의 확보를 위해 특별선발 할 수 있으며, 기술위원회 추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⑥ 선발과정 및 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자의 책무)

- ① 단장은 해당 대표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팀의 행정 및 대외적 역할을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각급 대표단의 감독, 코치 등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 소집훈련 대회참가 선수선발 건의
 2. 선수단 관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선수의 상벌, 경기력,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

4.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5. 각종 국내·외 참가 대회의 훈련 및 경기결과 보고
6. 기타 대표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의 건의

제14조 (선수의 의무)

- ① 각급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 ② 대표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 및 소집에 응할 의무
 2. 감독 및 코치의 지시에 순응할 의무
 3. 대표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
 4. 성실한 훈련태도를 견지할 의무
 5. 품위유지와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 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

제15조 (보고서)

- ① (감독보고서) 대표단의 감독은 대회 또는, 경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독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술분석보고서) 기술위원회는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기술위원을 파견하고, 기술위원은 대회 및 경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기술분석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①항 및 ②항의 보고서 양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술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포상)

- ① 각급 대표단의 지도자 및 선수 등에 대한 포상은 협회 포상 규정에 의한다.
- ②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표단의 운영 및 조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2.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공헌한 자
 3. 선수의 훈련 및 관리에 전념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
 4. 평소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기력이 뛰어나며, 대표단의 인화단결에 모범을 보인 자
 5. 기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 ① 각급 대표단의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협회 징계 규정에 의한다.
- ② 징계 양정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는 징계의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상으로 상정한다.
 1.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대표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한축구협회에 징계위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고의적으로 폭력행위 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훈련 제외 및 영구결격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18조 (격려금)

① 격려금 지급대상 대표단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남·녀 월드컵 대표단
2. 남·녀 아시안컵 대표단
3. 남·녀 올림픽 대표단
4. 남·녀 동아시안컵 대표단
5. 남·녀 아시안게임 대표단

② 위 1항 대표단의 구성원(감독, 코치, 선수 및 단장 등 지원스탭)에 대해서는 협회 예산, 대회의 규모, 성적, 공헌도를 감안, 종전 관례를 참고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U-20 이사 각급 남녀 대표단(감독, 코치, 지원스탭에 한함)의 경우에는 대회 성적,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대표단의 미성년 선수에게는 포상품 또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및 실비의 지급)

① 수당이라 함은 각급 대표단의 소집, 훈련, 경기에 대하여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비를 말한다.

② 실비라 함은 각급 대표단 선수가 소집, 훈련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표단원에게 각종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③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실비의 종류,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국고보조 등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⑥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대표단원의 용품착용)

① 대표단의 감독, 코치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모든 선수는 대표단의 공식훈련과 경기중 또는, 본 회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원의 자격으로 공식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초상권)

- ① 대표단원 개인의 초상권 및 대표단원들의 집합적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협회가 보유한다.
- ② 대표단원은 본회의 지시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 경기 종료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대표단원이 자신의 대표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 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본 조의 초상권, 집합적 초상권 및 대표팀 초상 등에 관한 정의는 협회 마케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선수단의 보험)

- ① 구단이나 팀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소속 선수에 대하여 국제축구연맹 규정(FIFA 선수이적 및 신분에 관한 규정 부록1 제2조 ③항)에 따라 대표단 소집기간 중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대표단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내국인 보험법에 따라 협회의 예산 범위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 (관련 규정의 변경시 적용)

본 규정과 달리 FIFA, AFC에서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각급 대표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0.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프로축구연맹 및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